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39
05. 지회 운영 규정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99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09
16. 인사 규정	119
17. 복무 규정	143
18. 보수 규정	169
19. 회계 규정	197
20. 물품관리 규정	217
21. 여비 규정	237
22. 문서관리 규정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5

상별위원회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상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5. 01. 19.

개정 2020. 11. 19.

개정 2022.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각종위원회로 상별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 12. 13.>

제2조(목적)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7조에 의하여 장애인체육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함에 있다. <개정 2022. 12. 13.>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산하지회 , 가맹단체, 심판, 지도자, 등급분류사, 장애인체육동호회와 그 단체의 산하 관련 모든 조직의 임원, 선수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1. 19.>

제4조(직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유관기관의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체육회 관련사업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중에는

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9.>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긴급업무 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표 창

제12조(종류) 장애인체육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제13조(절차) ① 표창은 산하지회장, 가맹단체장, 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1. 장애인체육회 창립기념일
- 2.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
- 3. 기타 정부가 정하는 시상일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1.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2. 국내외 각종 대회, 행사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

제15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별지 서식에 따른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징 계

제16조(상벌위원회의 설치 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 및 산하 지회는 본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종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중징계는 자격정지, 출전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
- 2. 경징계는 경고 및 근신으로 한다.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조항에 따라 징계한다.

③ 기타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별도의 제제를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4. 가맹단체, 산하지회 등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 받은 경우

제20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대상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하여 심문에 응해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선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서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본 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통고한다.

④ 재심청구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5조(징계의 해제 및 보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단체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장애인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